

직결된 민원업무처리를 과다하게 한 직원이 담당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 방향으로 업무조정이 요구됨.

○월동(제설)대책은 각동 공히 수립 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염화칼슘이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대장 기록관리도 소홀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망됨.

○보안등 수리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예산지출의 적정을 기하도록 할 것.

나. 建議事項

1) 단풍나무는 구지정나무로써 가로수 식재시 적극 활용토록 하고 증장기 식재 계획을 수립시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단풍나무 보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2) 준설작업 후 토사처리가 즉시 되지 않아 악취와 주민 통행불편등을 초래하는바 즉시 수거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3) 상수동사무소의 경우 법정동이 상수, 당인, 하중동으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연구 및 검토 요망.

4) 의료보험 담당직원에 대한 대민친절 방안 강구 및 조치 요망

다. 處理意見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며 마포구가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6.1.20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라. 其他 特記事項

○교통지도과 주차관리계장은 업무처리가 지연 방치된 부적차량 17,000건 5억 1천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는 등 과년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채권확보 압류조치 등 과정업무에 남다른 의지와 노력을 보였으므로 사기 진작책으로 표창상신 요망됨.

○노고산동:서강대 철도주변 정비 및 동면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 설치 운영

○상수동:동사무소 자체적으로 불우이웃돕기 결연사업 실시

○신수동:신수장학회 운영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5. 12. 2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1995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1995년 11월 8일

다. 상정일자:제3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95. 11. 8.)상정, 심사, 보류

제35회 정기회 제9차 위원회 ('95. 12. 22.)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총무과장 이춘기

가. 개정이유

통장 위촉자격에 관하여 연령을 제한하거나 남·여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위촉받은 통·반장이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직무를 대리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해촉사유에 포함하는 등 동조례 중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정비코자 함.

나. 주요골자

○통장 및 반장의 위촉자격을 당해 통·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덕망과 지도능력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위촉받은 통장 및 반장이 직무를 직접 처리치 않고 상습적으로 제3

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촉사유로 신설 규정함(안, 제5조제5항제3호)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장에 대한 공과금 일부 면제근거 삭제(안, 제11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자격을 인구조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종전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규정 제5조제2항제3호 규정인 구청장 재량에 의한 통장 위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장은 반드시 당해 통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종전에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만 규정되었던 민방위대장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5항제3호에 해촉사유를 추가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물의가 잦았던 대리통장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장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 실제 반장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장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조례로서 변경은 곤란하며, 반장의 존재여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김충환 위원) :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촉되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거주한다고 볼 수 없는 가게 등과 같은 상가에 주소를 이전해 놓고 있는 실정을 알고 있는 지?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사실을 인정하여 최근 일제정리를 실시한 바 있음.

○질의요지(정만직 위원) :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에도 생계수단인 가게 등에 주민등록만 돼 있고 거주는 다른 지역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 아닌가?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간부회의시 각동장에게 재정비토록 특별지시하겠음.

○질의요지(이인구 위원) : 지시로 끝나서는 안되고 실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요지(이춘기 총무과장) : 전 동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인력상의 문제가 있어 1~2개동을 표본으로 조사, 단계적으로 정리를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위원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5.10.20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통장 위촉자격에 관하여 연령을 제한하거나, 남·여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추세 및 남·여 평등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함으로 통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위촉받은 통·반장이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직무를 대리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를 해촉사유에 포함하는 등 동조례 중 미흡하였던 부분을 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통장 및 반장의 위촉자격을 당해 통·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덕망과 지도능력 등이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4항)

○위촉받은 통장 및 반장이 직무를 직접 처리치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해촉사유로 신설 규정함(안 제5조제5항제3호)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통장에 대한 공과금 일부 면제근거 삭제(안 제11조제1항)

3. 개정근거

○지방자치법(1995. 8. 4. 법률제4959호) 제4조제6항 및 제15조

○ 민방위기본법(1993.12.27. 법률제4608호) 제18조제6항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하는”을 “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으로 하고, 동조 중 “운영에 관한 사항을”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 의거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④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

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⑤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통장은 구청장이, 해당반장은 동장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반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3.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 처리케 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비수당등) ①통장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서울특별시마포구소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 페이지에 계속)

현행	개정안
제2조(통·반의 조직) ①(생략)	제2조(통·반의 조직) ①(현행과 같음)
②1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②1개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3조(통·반의 명칭과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u>구청장이</u>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u>동장이</u>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반의 명칭과 구역)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통장은 당해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6항에 의거 당해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은 구청장이, 해당 반장은 동장이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③반장을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반이 아닌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④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1. 타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3. 위촉받은 통장 또는 반장이 제7조에서 규정한 직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처리케하여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4.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실비수당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p> <p>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p>	<p>5.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p> <p>6.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1조(실비수당등) ①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p>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5. 12. 26.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5년12월23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5년12월23일
 - 다. 상정일자 : 제35회 정기회 제11차 위원회('95.12.26.)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종열
 - 가. 개정이유
 마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그 동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에서 운영해 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한 주민정서순화 및 문화 향상 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96년도부터는 위탁사업을 중단하고, 구에서 직영하고자 우리 구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것임.
 - 나. 주요 골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

운영에관한조례(1993.6.1.조례 제223호)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관수)
 - 동 폐지조례안은 '93.6.1.마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마포구지회장에게 위탁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고 '96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 '95년도 새마을이동문고 위탁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약 7,900만원으로서 지원된 예산에 비해 그 효과는 미진하였다는 구자체 평가에 의해 동 사업운영 방안을 개선하여 22,000여권의 도서는 구청과 24개 동사무소에 배분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그 동안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운영방안이 수립되어 할 것은 물론 이동문고 위탁종사자 3명의 실직에 따른 생계대책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채재선 위원) : 이동도서관 종사자 3명에 대하여 기능적으로 특별채용할 용의는 없는가?